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26일

탄천면장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김**	김** 1956-04-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9-0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탄천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10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김**	김** 1956-04-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로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조정구 문의전화 : 041-840-2757)

2013년 09월 26일

탄천면장

